

[붙임2]

근로계약서(표준안)

강북구와 ○○○(이하 “근로자”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1. 계약기간 :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12월 20일까지
2. 업무내용 : 2016년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요원 사업
3. 근무장소 : 강북구 CCTV 관제센터
4. 근무일 : 주 5일(월요일~금요일)
5. 근무시간 : 근무일 09:00~16:00(휴게시간 :12:00~13:00)
6. 유급휴일 : 매주 일요일(토요일은 무급휴일) 및 근로자의 날(5.1)
7. 휴가
 - 연차유급휴가 :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부여
 - 경조사 휴가 : 공무원에 준하여 부여하며, 유급으로 함
8. 임금 : 일급제
 - 일급 : 1일 38,000원
 - ※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급 (6,200원)을 곱한 금액을 지급
 - 주휴수당 : 38,000원(1주 동안 개근한 경우 지급)
 - 식비 등 : 1일 5,000원(실 근로한 날만 지급)
 -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: 38,000원(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수당 지급)
9. 임금지급일 : 매월 10일(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)
10.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
11. 무단으로 결근, 지각, 조퇴를 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, 동료 또는 시민과 싸움, 성희롱,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2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근로계약 해지시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함
12. 근로자는 사업추진, 직업역량 배양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또는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.

2016년 3월 일

(사용자) 사용자명 : (전화 :)
 주 소 :
 대 표 자 : (서명)

(근로자) 주 소 :
 연 락 처 :
 성 명 : (서명)

※ 위 계약서와 다르게 근로를 하게 하거나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위반 한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(고용노동부 상담센터 ☎1350)